

제1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장 위원회 구성

제2장 심의·의결 절차

제3장 관련 법규 개정 현황



제1장

위원회 구성



1. 활동기간

언론중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에 따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선거일 2016년 4월 13일)와 관련하여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기사(사설·논평·광고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역대 심의위원회 운영기간>

구 분	운영기간	선거일	비 고
「제16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0. 2. 25. ~ 2000. 5. 13.	2000. 4. 13.	2000. 2. 선거법 개정으로 선심위 관련 조항 신설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2. 2. 14. ~ 2002. 7. 13.	2002. 6. 13.	
「제16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2. 8. 21. ~ 2003. 1. 18.	2002. 12. 17.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3. 12. 17. ~ 2004. 5. 15.	2004. 4. 15.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6. 1. 31. ~ 2006. 6. 30.	2006. 5. 31.	
「제17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7. 8. 21. ~ 2008. 1. 18.	2007. 12. 19.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07. 12. 11. ~ 2008. 5. 9.	2008. 4. 9.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0. 2. 1. ~ 2010. 7. 2.	2010. 6. 2.	2009. 12. 선거법 개정으로 선심위 설치·운영기간 변경
2010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0. 5. 29. ~ 2010. 8. 27.	2010. 7. 28.	2010. 1. 선거법 개정으로 2010년부터 재보궐선거 시에도 선심위 설치 운영
2010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0. 8. 28. ~ 2010. 11. 26.	2010. 10. 27.	
2011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1. 2. 26. ~ 2011. 5. 27.	2011. 4. 27.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1. 8. 27. ~ 2011. 11. 25.	2011. 10. 26.	



구 분	운영 기간	선거일	비 고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1. 12. 12. ~ 2012. 5. 11.	2012. 4. 11.	
2012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2. 2. 10. ~ 2012. 5. 11.	2012. 4. 11.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2. 4. 22. ~ 2013. 1. 18.	2012. 12. 19.	
2012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2. 10. 20. ~ 2013. 1. 18.	2012. 12. 19.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3. 2. 23. ~ 2013. 5. 24.	2013. 4. 24.	
2013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3. 8. 31. ~ 2013. 11. 29.	2013. 10. 30.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4. 2. 3. ~ 2014. 7. 4.	2014. 6. 4.	
201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4. 5. 31. ~ 2014. 8. 29.	2014. 7. 30.	
201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4. 8. 30. ~ 2014. 11. 28.	2014. 10. 29.	
201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5. 2. 28. ~ 2015. 5. 29.	2015. 4. 29.	
201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5. 8. 29. ~ 2015. 11. 27.	2015. 10. 28.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5. 12. 14. ~ 2016. 5. 13.	2016. 4. 13.	
2016년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2016. 2. 13. ~ 2016. 5. 13.	2016. 4. 13.	2015. 8. 선거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대선이 없는 해에는 재보궐선거 연 1회로 축소

2. 구성

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그리고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추천권자인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후에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 변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언론학회(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신문협회(언론인단체) 및 민주언론시민연합(시민단체) 등에서 추천 의뢰를 받아 모두 9명의 심의위원을 위촉하였으며, 2016년 3월 18일 국민의당이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함에 따라 2016년 3월 28일자로 국민의당 추천 위원 1인을 추가 위촉하였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명단>

구분	성명	이력	추천단체
위원장	한 위 수	(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언론중재위원회
부위원장	남 래 진	(현) 한서대 초빙교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 원	전 진 우	(전) 동아일보 논설실장	더불어민주당 (구 새정치민주연합)
	오 대 현	변호사,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새누리당
	신 용 진	(전) MBC 보도본부장	국민의당
	김 화 성	(전) 동아일보 전문기자	한국신문협회(언론인단체)
	양 경 승	부장판사, (현) 사법연수원 교수	언론중재위원회
	윤 영 태	(현) 동의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민주언론시민연합(시민단체)
	강 신 업	변호사, (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이 중 혁	(현)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한국언론학회(언론학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출범식 사진> : 왼쪽부터 윤영태 위원, 이중혁 위원, 강신업 위원, 양경승 위원, 한위수 심의위원장, 언론중재위원회 박용상 위원장, 전진우 위원, 남래진 부위원장, 김화성 위원, 오대현 위원>

3. 기능

심의위원회는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자체심의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의결한다. 그리고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기사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하여 심의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경우 이를 심의·의결하며, 후보자나 정당(중앙당)이 언론사에 반론보도를 청구했으나 협의가 결렬되어 심의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이를 심의·의결한다.

<제재조치 관련규정>

제재조치	관련법률	관련규칙
사과문 게재 *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5조
정정보도문 게재		
반론보도문 게재	공직선거법 제8조의4	
경고결정문 게재	-	
주의사실 게재	-	
경고 또는 주의	-	
권고 등	-	

※ 사과문 게재조치는 2015년 7월 30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3헌가8)으로 2015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부터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함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회의 장면>

제2장

심의·의결 절차



1. 자체심의

심의 담당 부서는 심의위원회가 설치·운영되는 기간 동안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 기사를 모니터하여 선거기사심의기준 및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보도를 안건으로 상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불공정한 보도로 판단하는 경우 정정보도문, 반론 보도문, 경고결정문 게재, 주의사실 게재 및 경고, 주의, 권고 등의 결정을 내린 후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해당 언론사에 위 결정사항의 이행을 지체없이 명한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언론사는 1회에 한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청구는 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2. 시정요구심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심의위원회가 설치·운영되는 기간 동안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기사가 불공정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시정요구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심의하여, 요구사항이 이유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문, 반론보도문, 경고결정문 게재, 주의사실 게재 및 경고, 주의, 권고 등의 결정을 내린다. 이후 절차는 자체심의와 동일하다.

3. 반론보도청구회부심의

정당(중앙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날부터 선거일까지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기사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기사게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언론사에 직접 반론보도문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언론사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청구인(정당 혹은 후보자)이나 언론사는 이를 지체없이 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회부된 반론보도청구를 48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반론보도문 청구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인용' 결정을, 이유가 없거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각각 '기각'과 '각하' 등을 결정하여 양측에 통보한다. 이후 절차는 자체심의나 시정요구심의 절차와 동일하다.



제3장

관련 법규 개정 현황



1. 공직선거법 개정(2015년 8월 13일, 2015년 12월 24일)

국회는 2015년 8월 13일 “찾은 보궐선거로 인한 정치적 대립과 재정부담 등이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한 해 두 차례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을 한 번으로 축소함으로써 찾은 선거로 인한 정국의 불안정성을 해소함은 물론, 국민혈세의 낭비를 막고, 찾은 선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연 2회 실시되던 재·보궐선거를 1회로 축소(대선이 있는 해는 2회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2016년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실시되지 않는다.

또한 2015년 12월 24일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제110조제2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2. 선거기사심의기준 개정(2016년 5월 3일)

심의위원회는 2015년 12월 2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110조제2항의 내용을 심의기준에 추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에서 여론조사보도요건 위반 관련 심의를 개시함에 따라 중복제재 등의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기준을 개정하였다.

첫째, 객관성 및 사실보도 위반 규정에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기사’를 추가.

둘째, 여심위 소관인 선거여론조사기준에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은 여론조사 관련 보도에 대한 심의기준 위주로 조문 정비.

